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조인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475 발의연월일: 2024. 8. 1.

발 의 자:조인철・김 현・김남근

박민규・허 영・오세희

황정아 · 오기형 · 황명선

이개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특정한 죄를 지은 자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 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이렇게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는 범죄가 포함되지 않음.

이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며 전파력이 높은 정보통 신서비스상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업로드함으로써, 그 조회수 등에 기반한 불법적인 수익창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.

이에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75조의2).

법률 제 호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5조의2 전단 중 "제72조제1항제2호"를 "제70조제1항 및 제2항, 제72조제1항제2호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5조의2(몰수·추징) <u>제72조제1</u>	제75조의2(몰수·추징) <u>제70조제1</u>
<u>항제2호</u> 및 제73조제7호의 어	항 및 제2항, 제72조제1항제2호
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	
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	
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	
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, 이를	
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	
액을 추징할 수 있다. 이 경우	
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	i
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.	